# 主要業務報告

2002. 11

税務管理課

# 보 고 순 서

□ 일 반 현 황

□ 2002 주요업무 실적

□ 2003 주요업무 계획

□ 특 수 사 업

# 일 반 현 황

## Ⅰ. 직원현황

| 구 분 | 계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기능직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 원 | 32<br>( 2 ) | 1<br>( 1 ) | 5<br>( 1 ) | 5 | 12 | 9 | 0 | |
| 현 원 | 33<br>( 2 ) | 1<br>( 1 ) | 4<br>( 1 ) | 7 | 12 | 9 | 0 | |

(행정직)

## Ⅱ. 담당별 업무분장

| 담 당 별 | 분 장 사 무 |
|---|---|
| 세입총괄담당 | · 시·구세 세입 분석·평가 및 조례·규칙관리<br>· 매월 세입 징수 보고서(현계표)작성·보고<br>· 시·구세 가산금(중가산금)결의, 소인<br>· 시·구세 감액, 과오납금 환부결정결의 및 통지·충당<br>· 시·구세 영수필 통지서 및 징수부·수납부의 관리 |
| 징수 1 담당 | · 체납정리 총괄계획수립 및 집행<br>·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괄<br>· 담당동(여의동,양평동,신길동) 전세목 시효 및 불납결손 처리<br>· 세무종합 전산총괄 및 주민등록전산망 관리<br>· 체납자 예금조회 및 신용정보 제공 총괄<br>· 담당동(여의동,양평동,신길동)의 체납세 징수 및 정리 |
| 징수 2 담당 | · 기계장비 관련 체납세 및 고발예고 총괄<br>· 급여압류 및 교부청구 총괄<br>· 담당동(영등포,당산,도림,문래,대림동)전세목 시효 및 불납결손 처리<br>·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면허세 체납 총괄<br>· 체납처분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송처리<br>· 담당동(영등포, 당산, 도림, 문래, 대림동)체납세 징수 및 정리 |
| 세외수입담당 | · 시·구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총괄<br>·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 요율조정 총괄<br>·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도 연구 및 개선<br>· 세외수입 징수 보고서(현계표) 작성·보고 |

# 2002 주요업무실적

## Ⅰ. 세입 과징현황

2002. 9.30현재 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| | 목표 (A) | 조정 (B) | 징수 (C) | 비율 A:C | 비율 B:C | 전년동기 A:C | 전년동기 B:C | 증감 A-C | 증감 B:C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계 | | | 536,673 | 505,713 | 490,789 | 91.45 | 97.05 | 79.16 | 96.48 | 12.29 | 0.57 |
| 구세 | 계 | | 150,194 | 125,329 | 121,867 | 81.14 | 97.24 | 82.49 | 96.77 | △1.35 | 0.47 |
| | 지방세 | 소계 | 59,203 | 29,440 | 28,928 | 48.86 | 98.26 | 43.93 | 97.55 | 4.93 | 0.71 |
| | | 재산세 | 11,295 | 11,596 | 11,233 | 99.45 | 96.87 | 98.47 | 95.63 | 0.98 | 1.24 |
| | | 종합토지세 | 25,976 | 88 | 40 | 0.15 | 45.45 | △4.12 | 100.00 | 4.27 | △54.55 |
| | | 면허세 | 1,056 | 1,091 | 994 | 94.13 | 91.11 | 94.79 | 88.96 | △0.66 | 2.15 |
| | | 사업소세 | 19,892 | 15,727 | 15,723 | 79.04 | 99.97 | 73.92 | 99.90 | 5.12 | 0.07 |
| | | 과년도 | 984 | 938 | 938 | 95.33 | 100.00 | 82.90 | 100.00 | 12.43 | - |
| | 기타 | 소계 | 90,991 | 95,889 | 92,939 | 102.14 | 96.92 | 106.23 | 96.57 | △4.09 | 0.35 |
| | | 세외수입 | 52,733 | 64,796 | 61,846 | 117.28 | 95.45 | 124.03 | 95.18 | △6.75 | 0.27 |
| | | 보조금 | 20,629 | 16,723 | 16,723 | 81.07 | 100.00 | 83.81 | 100.00 | △2.74 | - |
| | | 조정교부금 | 17,574 | 14,315 | 14,315 | 81.46 | 100.00 | 75.40 | 100.00 | 6.06 | - |
| | | 지방교부세 | 55 | 55 | 55 | 100.00 | 100.00 | - | - | - | - |
| 시세 | 계 | | 386,479 | 380,384 | 368,922 | 95.46 | 96.99 | 77.98 | 96.37 | 17.48 | 0.62 |
| | 부동산취득세 | | 40,698 | 41,540 | 39,827 | 97.86 | 95.88 | 83.06 | 97.43 | 14.80 | △1.55 |
| | 부동산등록세 | | 83,737 | 75,744 | 74,955 | 89.51 | 98.96 | 59.74 | 99.73 | 29.77 | △0.77 |
| | 도시계획세 | | 14,273 | 6,611 | 6,441 | 45.00 | 97.43 | 38.84 | 95.93 | 6.16 | 1.50 |
| | 공동시설세 | | 8,267 | 7,316 | 7,160 | 87.00 | 97.87 | 81.17 | 96.40 | 5.83 | 1.47 |
| | 지역개발세 | | 55 | 48 | 47 | 85.45 | 97.92 | 100.00 | 97.14 | △14.55 | 0.78 |
| | 차량취득세 | | 8,023 | 7,622 | 7,315 | 91.18 | 95.97 | 60.67 | 94.22 | 30.51 | 1.75 |
| | 주민세 | | 167,552 | 161,603 | 155,016 | 92.52 | 95.92 | 80.44 | 94.87 | 12.08 | 1.05 |
| | 자동차세 | | 16,814 | 10,510 | 9,401 | 55.91 | 89.45 | 53.04 | 86.01 | 2.87 | 3.44 |
| | 차량등록세 | | 14,491 | 9,967 | 9,951 | 68.67 | 99.84 | 63.59 | 99.87 | 5.08 | △0.03 |
| | 레저세 | | 26,937 | 21,662 | 21,662 | 80.42 | 100.00 | 77.88 | 100.00 | 2.54 | - |
| | 지방교육세 | | - | 34,041 | 33,427 | - | 98.20 | - | 97.54 | - | 0.66 |
| | 과년도 | | 5,632 | 3,720 | 3,720 | 66.05 | 100.00 | 60.17 | 100.00 | 5.88 | - |

## Ⅱ. 체납 지방세 징수

### □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기간 설정운영

○ 상반기 : 2002. 4. 1 ~ 5. 31 (2개월간)

○ 하반기 : 2002. 10. 1 ~ 11. 30 (2개월간)

### □ 체납세 징수실적

2002. 9. 30현재 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| 현 년 도 | | 과 년 도 | | 증감(과년도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건 수 | 금 액 | 건 수 | 금 액 | 건 수 | 금 액 | 금액 | 비율 |
| 계 | 90,417 | 8,698 | 35,771 | 4,041 | 54,646 | 4,657 | △873 | △15.79% |
| 구 세 | 21,214 | 1,651 | 13,574 | 713 | 7,640 | 938 | 18 | 2.0% |
| 시 세 | 69,203 | 7,047 | 22,197 | 3,328 | 47,006 | 3,719 | △891 | △19.33% |

### □ 체납자 조치 실적

○ 부 동 산 압 류 : 724건 4,232백만원(징수 724건 4,850백만원)

○ 자 동 차 압 류 : 5,613대 3,980백만원(징수 8,887대 1,383백만원)

○ 자동차번호판영치 : 3,680대 2,512백만원(징수 2,714대 1,221백만원)

○ 예금및급여압류 : 1,070명 2,082백만원(징수 395명 991백만원)

○ 신 용 정 보 제 공 : 640명 8,694백만원(징수 43명 2,474백만원)

○ 부동산공매 의뢰 : 40건 436백만원(징수 25건 163백만원)

○ 차 량 공 매 의 뢰 : 16대 86백만원

○ 체 납 세 액 고 지 서 발 송 : 9회 1,411,216건

○ 체납세고지서 반송분 주소추적 확인 재발송 : 11,804건

○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 : 3회 329,338건

○ 체 납 자 재 산 및 직 장 조 회 : 4회 84,731건

# III. 세외수입 과징실적

2002. 9. 30현재 (단위 : 백만원)

| 세목별 | | 목표(A) | 조정(B) | 징수(C) | 진도 | | 전년동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A:C | B:C | A:C | B:C |
| 총계 | | 52,733 | 64,796 | 61,846 | 117.28 | 95.45 | 124.03 | 95.18 |
| 경상적수입 | 소계 | 24,063 | 16,730 | 16,553 | 68.79 | 98.95 | 79.94 | 98.49 |
| | 재산임대 | 173 | 170 | 140 | 80.96 | 82.05 | 131.84 | 91.20 |
| | 사용료 | 2,985 | 2,797 | 2,697 | 90.37 | 96.42 | 98.39 | 94.07 |
| | 수수료 | 4,250 | 3,693 | 3,647 | 85.81 | 98.77 | 96.15 | 98.15 |
| | 징수교부금 | 14,972 | 8,941 | 8,940 | 59.72 | 100.00 | 66.50 | 100.00 |
| | 이자수입 | 1,683 | 1,129 | 1,129 | 67.07 | 100.00 | 122.56 | 100.00 |
| 임시적수입 | 소계 | 28,670 | 48,066 | 45,293 | 157.98 | 94.23 | 154.04 | 94.06 |
| | 재산매각 | 4,304 | 4,458 | 4,443 | 103.23 | 99.67 | 134.06 | 80.54 |
| | 순세계잉여금 | 19,274 | 19,274 | 19,274 | 100.00 | 100.00 | 103.22 | 100.00 |
| | 이월금 | 919 | 17,145 | 17,145 | 1,866.34 | 100.00 | 2,688.70 | 100.00 |
| | 부담금 | 390 | 296 | 296 | 75.89 | 100.00 | | |
| | 융자금 회수 | 7 | 6 | 6 | 91.73 | 100.00 | 38.92 | 100.00 |
| | 잡수입 | 2,582 | 5,357 | 2,599 | 100.62 | 48.51 | 104.42 | 44.07 |
| | 과년도수입 | 1,194 | 1,530 | 1,530 | 128.19 | 100.00 | 93.41 | 100.00 |

## □ 추 진 실 적

○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계획 시달 (2002. 1월)
- 추 진 기 간 : 2002. 1. 1 ~ 2003. 2. 28
- 징수목표액 : 52,733백만원

○ 체납세 중점정리기간 운영
- 상반기 : 2002. 8. 1 ~ 9. 30(2개월간)
- 하반기 : 2002.11. 1 ~ 12.31(2개월간)
- 결산기 : 2003. 1. 1 ~ 2.28(2개월간)

○ 2002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회 - 3회(5월, 8월, 12월)

○ 세외수입 심사분석 - 4회(5월, 8월, 11월, 2003년 4월)

○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및 직장조회
- 전국재산조회 : 4회 79,145건
- 직 장 조 회 : 2회 46,596건

○ 세외수입 실적평가 및 시상으로 사기 앙양
- 우수부서 포상 : 6개부서 1,700천원(유공공무원 표창 5명)

## Ⅳ. 주요업무 추진사항

□ 상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

○ 기　　간 : 2002. 1. 1 ~ 6. 30

○ 정리실적 : 106,695건 10,019백만원

- 징수실적: 39,624건 3,301백만원
- 불납결손: 67,071건 6,718백만원

○ 추진내용

- 체납세 납부홍보강화 : 반회보, 인터넷지역신문 등에 게재
-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조치

□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단말기 및 무인수납단말기 설치

○ 내　　용 :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제공

○ 카 드 사 : LG카드, 삼성카드(향후 타카드사도 참여 예정)

○ 시행일자 : 2002. 4. 1

□ 신용정보제공 PC통신단말기 설치 운영

○ 내　　용 : 한국통신의 PC통신망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이용 신용정보 조회 및 해제업무 처리 (종전:서면으로 통보하여 처리)

○ 시행일자 : 2002. 10. 7

○ 향후일정 : 신용정보 등록업무는 추후 구축예정

□ 체납자 중 주민번호 오류자 정비

○ 대　　상 : 28,452건 2,467백만원

○ 내　　용

-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번호 오류자료 정리
- 무자료 및 미확인자료는 결손처리

□ 압류차량에 대한 공매추진

○ 대　　상 : 압류차량 중 5회이상 계속 체납자

○ 내　　용 : 압류차량을 인도명령후 인도된 차량을 인터넷공매 전문업체를 통한 일반인에게 공개매각

# 2003년 주요업무계획

□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

□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·관리 강화

□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

□ 세무공무원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

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

# 2003. 주요업무계획

## Ⅰ.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

### □ 세 입 목 표

(단위 : 백만원)

| 세 목 별 | | 2003.예산 (A) | 2002.예산 (B) | 비 교 (증·감) 금 액 | 비 교 (증·감) 비 율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| 62,112 | 59,203 | 2,909 | 4.9 | |
| 구 세 | 재 산 세 | 11,868 | 11,295 | 573 | 5.1 | |
| | 종 합 토 지 세 | 26,976 | 25,976 | 1,000 | 3.9 | |
| | 면 허 세 | 1,076 | 1,056 | 20 | 1.9 | |
| | 사 업 소 세 | 21,083 | 19,892 | 1,191 | 6.0 | |
| | 과 년 도 | 1,109 | 984 | 125 | 12.7 | |

### □ 추 진 계 획

○ 반송고지서 주소조회 및 주민(법인)등록번호 미입력자 보완으로 정확한 송달

○ 자진납부 유도 징수율 제고 노력 강화

- 납세안내문 발송 납부독려, 인터넷 및 지역홍보매체 활용, 입간판 설치 등

○ 체납지방세 인터넷 및 카드 납부 홍보 강화

○ 세입실적 분석 평가 보고회 : 년 4 회

- 매분기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

○ 동별 책임 담당자 지정 징수독려 강화

○ 체납 발생시 적기 채권 확보

- 체납후 1차 독촉기일 경과시 부동산 등 압류조치

○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강화

○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세 불납결손 적극 추진

○ 신용정보제공, 검찰고발 등 개인 신용제재 강화

## Ⅱ.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·관리 강화

□ 세 입 목 표

(단위 : 백만원)

| 세목별 | | 2003예산 | 2002예산 | 증·감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금액 | 비율 | |
| 총계 | | 45,555 | 45,644 | △89 | △0.2 | |
| 경상적수입 | 소계 | 23,701 | 24,461 | △760 | △3.1 | |
| | 재산임대수입 | 202 | 172 | 30 | 17.1 | |
| | 사용료수입 | 3,162 | 2,985 | 177 | 5.9 | |
| | 수수료수입 | 4,674 | 4,648 | 26 | 0.6 | |
| | 징수교부금 | 14,718 | 14,972 | △254 | △1.7 | |
| | 이자수입 | 945 | 1,684 | △739 | △43.9 | |
| 임시적수입 | 소계 | 21,854 | 21,183 | 671 | 3.2 | |
| | 재산매각수입 | 737 | 444 | 293 | 66.0 | |
| | 순세계잉여금 | 16,825 | 16,955 | △130 | △0.8 | |
| | 이월금 | 1 | 1 | 0 | 0.0 | |
| | 융자금회수수입 | 3 | 7 | △4 | △50.0 | |
| | 잡수입 | 2,730 | 2,582 | 148 | 5.7 | |
| | 과년도수입 | 1,558 | 1,194 | 364 | 30.5 | |

□ 추진계획

○ 2003년 세입목표 추진 강화

- 2003년 목표액 달성 대책수립계획 시달(2003. 1월)
- 세외수입부서 지도·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

○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기간 운영

- 상반기 : 2003. 7. 1 ~ 9.30(3개월)
- 하반기 : 2003.10. 1 ~ 12.31(3개월)
- 결산기 : 2004. 1. 1 ~ 2.29(2개월)
- 주요추진내용
  -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
  -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과감한 불납결손

○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

- 무단 점·사용 시설 색출 세입화
- 무료 제공시설 유료화 추진

○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 실시

- 세외수입 징수실적 분석 : 분기별 1회 (연4회)
-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: 상·하반기 및 결산기
- 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사기 앙양

## III.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

○ 개정된 지방세 법령 및 조례, 구제제도 등 안내

○ 체납처분시 예고제실시로 사전납부안내를 통한 민원발생 예방

○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

-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배부
- 통 · 반장을 통한 납부 홍보
- 영등포구 인터넷을 통한 홍보
- 반상회, 영등포구소식지 및 지역신문, 영등포뉴스 등 이용 홍보

○ 체납처분 시 「담당자」 실명제 실시 - 체납독촉장, 안내문 등에 담당공무원 명기

○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실천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

## IV.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· 효율성 제고

○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

- 지방세 실무과정 위탁교육 추진: 서울시공무원교육원, 전산정보관리소
- 자체 직무 및 정보화교육 실시(기획예산과 및 부과과 업무협조)

○ 정신교육 강화

- 지방세 전문교육과 병행 실시
- 자체 정신 · 소양 교육 실시

○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개최(서울시 주관)

- 연구과제 연찬을 통한 지방세정의 수준향상 도모

○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

○ 세무공무원 사기 앙양 진작

-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

## Ⅴ.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

□ **체 납 현 황** (2002. 9월 30일 현재)

총 307,326건 32,018백만원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○ 현년도 : 125,732건 ⇒ 11,909백만원 | - 구 세 | 8,074건 | 510백만원 |
| | - 시 세 | 117,658건 | 11,399백만원 |
| ○ 과년도 : 181,594건 ⇒ 20,109백만원 | - 구 세 | 32,809건 | 2,738백만원 |
| | - 시 세 | 148,785건 | 17,371백만원 |

□ **정 리 목 표**

○ 현 년 도 : 체납액의 50% 이상

○ 과 년 도 : 체납액의 15% 이상

□ **중점추진사항**

○ 체납세 징수목표 설정 책임 달성

○ 체납액 징수활동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적 추진

○ 고질·고액 체납자 제재 조치 강화

○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

□ **세부 징수 대책**

○ 체납정리 기간 설정 운영

- 2002결산기 : 2003. 1. 1 ~ 2. 28 ( 2개월간 )
- 상 반 기 : 2003. 5. 1 ~ 6. 30 ( 2개월간 )
- 하 반 기 : 2003.10. 1 ~ 11. 30 ( 2개월간 )

○ 체납액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

- 인터넷, 반상회, 영등포구소식지, 지역신문, 입간판 설치 등

○ 체납자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등 제재 강화

○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 철저(연4회)

○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행

○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

○ 체납고지서 적정 송달을 위한 오류 주민(법인)등록번호 및 주소지 수정

○ 징수 불가능 체납금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

# 특 수 사 업

□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확대시행 및 홍보계획

□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 추진

□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로 고질 체납자 정리

# Ⅰ.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시행 및 홍보계획

납세자에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의 효과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"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"를 확대 시행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□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

○ 2000. 1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 개정
- 카드사도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 가능

○ 2000. 3. LG카드(주)와 지방세 수납대행계약 체결
- 인터넷에 의한 카드론(대출) 및 할부납부제 시행

○ 2002. 8. 삼성카드(주)와 지방세 수납대행계약 체결
- 일반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일시불 결재시 수수료 미 징구

## □ 문제점

○ 납부가능한 카드사의 제한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
- 현재 납부가능한 카드사 : LG카드(주), 삼성카드(주)

○ 납세자의 인식부족 인한 신용카드납부제의 홍보가 필요

## □ 주요추진사항

○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대상 카드사 확대 - 현재 LG카드, 삼성카드
- 향휴 BC,국민,외환카드 등 주요카드사 참여 예정

○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신용카드납부제 실시

○ 카드승인단말기(CAT기) 또는 무인수납단말기 설치

○ 신용카드 수납업무를 카드사 직원이 직접 처리

○ 신용카드납부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

## □ 기대효과

○ 납세자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신용카드납부제 실시
- 일시불 납부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수수료 문제 해소
- 납기연장의 효과 및 현금부족시 할부납부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

○ 수납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제공

## Ⅱ.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 추진

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압류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일환으로 압류차량을 인도명령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수행 인터넷에 의한 공매를 추진하고자 함

□ **현 황**

○ 시 세 체 납 : 155,074건 18,088백만원

○ 자동차세체납 : 59,434건 7,145백만원 (대수 : 12,533대)

※시세 체납액의 39.5% 점유

○ 자동차 압류 : 15,784대

□ **대 상** : 압류차량 중 5회이상 계속체납차량

□ **관련근거**

○ 지방세법 제28조

○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법 제61조~제84조

○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~제81조

□ **문제점**

○ 압류차량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 고발조치

⇒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

□ **추진방법**

○ 인터넷 공매전문 업체를 통한 공매

○ (주)오토마트 홈페이지(www.automart.co.kr)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매각

□ **기대효과**

○ 인터넷을 통한 압류자동차 매각으로 체납처분의 공정성 확보

○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 천명

○ 세무행정의 대외적 홍보효과 및 조세정의 구현

## Ⅲ.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요구로 고질 체납자 정리

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허가·인가·면허 및 등록과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취소를 요구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**체납현황**

○ 체 납 자 : 대성전기외 901명

○ 체납건수 및 금액 : 9,524건 4,443백만원

※ 체납자명단 작성기준일 : 2002. 9. 1일

□ **관련근거**

○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

○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

□ **관허사업 주무관청**

○ 내부기관 : 건설관리과, 공원녹지과, 교통지도과 등 15개부서

○ 외부기관 : 건설교통부, 관세청 등 15기관

□ **문제점**

○ 각종면허를 받은 납세자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세무부서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

○ 관허사업 주무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결여

□ **추진사항**

○ 체납자 명부 및 관허사업제한 결과통보 양식 발송

※ 세무관리과 → 관허사업 주무관청

○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 결과통보

※ 관허사업 주무관청 → 세무관리과

○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 통지문 발송(세무관리과)

□ **기대효과**

○ 관허사업 주무관청의 협조 및 독려로 체납징수 제고

○ 지방세체납자의 원천적인 관허사업제한으로 조세정의 실현